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2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위성곤·김한규·문대림

김원이 · 모경종 · 민병덕

박희승 · 서영교 · 정을호

조인철 · 최민희 · 한병도

한준호 · 허 영 · 황정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란 다음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서귀포시

별표 2 중 제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 서귀포	서귀포	서귀포시
--------	-----	------

별표 3 중 광주고등법원란의 제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	서귀포	제주시 · 서귀포시
----	-----	------------

별표 7 중 제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주 서귀	포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